

“올바른 국정감사만이 국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”
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

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 (지방공무원과장)

제 목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

지방공무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깊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,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-241호와 관련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공무원임용령과 내용이 상이한 ‘제33조의 2(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) ⑥ 제4항에 따른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제5항에 따른 근속승진 후보자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(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)를 초과할 수 없다.’ 중 ‘**직렬별**’의 삭제를 요청 합니다.

▶요청 사유 : ① 지방직공무원이 국가직공무원에 비해 차별받는 요인 발생
②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실질적인 근속승진 대상자가 극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지방직 공무원은 국가직공무원에 비해 승진적체가 심각하여 소수직렬과 일부 기술직렬의 경우 7급으로 퇴직을 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사기저하 및 내부갈등 심화 우려.

2. 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(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)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분리·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1.3.7>’중 ‘연1회 실시’를 ‘**연2회 실시**’로 개정을 요청 합니다.

▶요청 사유 : 기관별 연2회 승진인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근속승진만은 연 1회로 제한되어 있어 당해직급 승진시기에 따라 1년 이상 지연 등 불이익 사례 다수 발생됨. 연2회 정기인사와 함께 실시하여 내부불만 해소를 통한 조직활성화 필요. 끝.

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대표



총무국장 박정우 사무총장 이성운 부대표 윤주용 대표 최중훈

시행 광역연합 - 49 (2012. 8. 31) 접수 - (2012. .)

우 200-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(중앙로1)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

전화 033-249-3800 전송 033-249-4087

/ 공개